

[별표 3]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(제34조제2항 관련)

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

□ 금리변동값($y = \text{금리차이} - 50\text{bp}$)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$|y| \leq 50\text{bp}$: 60% 지원 또는 환수
- $50\text{bp} < |y| \leq 100\text{bp}$: 70% 지원 또는 환수
- $100\text{bp} < |y|$: 80% 지원 또는 환수

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

□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분담분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관리운영권 설정일 이후 매 2년 단위로 정산한다.
- 해당 기간의 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정산을 통한 회수시에는 기 지원금액을 한도로 회수한다.
- 정산을 통한 지원시에는 미회수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.
- 세부적인 정산방법 등에 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.

<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분담금 산정례>

□ 가정

- 당해기간의 금리평균값이 국채 4.20%, 은행채 5.90%인 경우

□ 위험분담금 정산

- 금리차이 = $5.90\% - 4.20\% = 170\text{bp}$
- 금리변동값(y) = $170\text{bp} - 50\text{bp} = 120\text{bp}$
- 구간별 위험분담
 $120\text{bp} : 50\text{bp}(\times 60\%) + 50\text{bp}(\times 70\%) + 20\text{bp}(\times 80\%) \Rightarrow 81\text{bp}$
- 당해기간의 수익률(국채+ α)에 위험분담분(81bp)을 가산하여 정산